[별지 제18호의2서식]<신설 2000.7.29>

(앞 쪽)

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30일
신청인	①성명(대표자)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	
	④상 호	(전화 :)		
	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
	⑥소 재 지			
⑦검 사 유 종				

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자원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

수 수 료
없 음

1.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
2. 사업계획서
3.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
4. 공인시험·검사기관 인정서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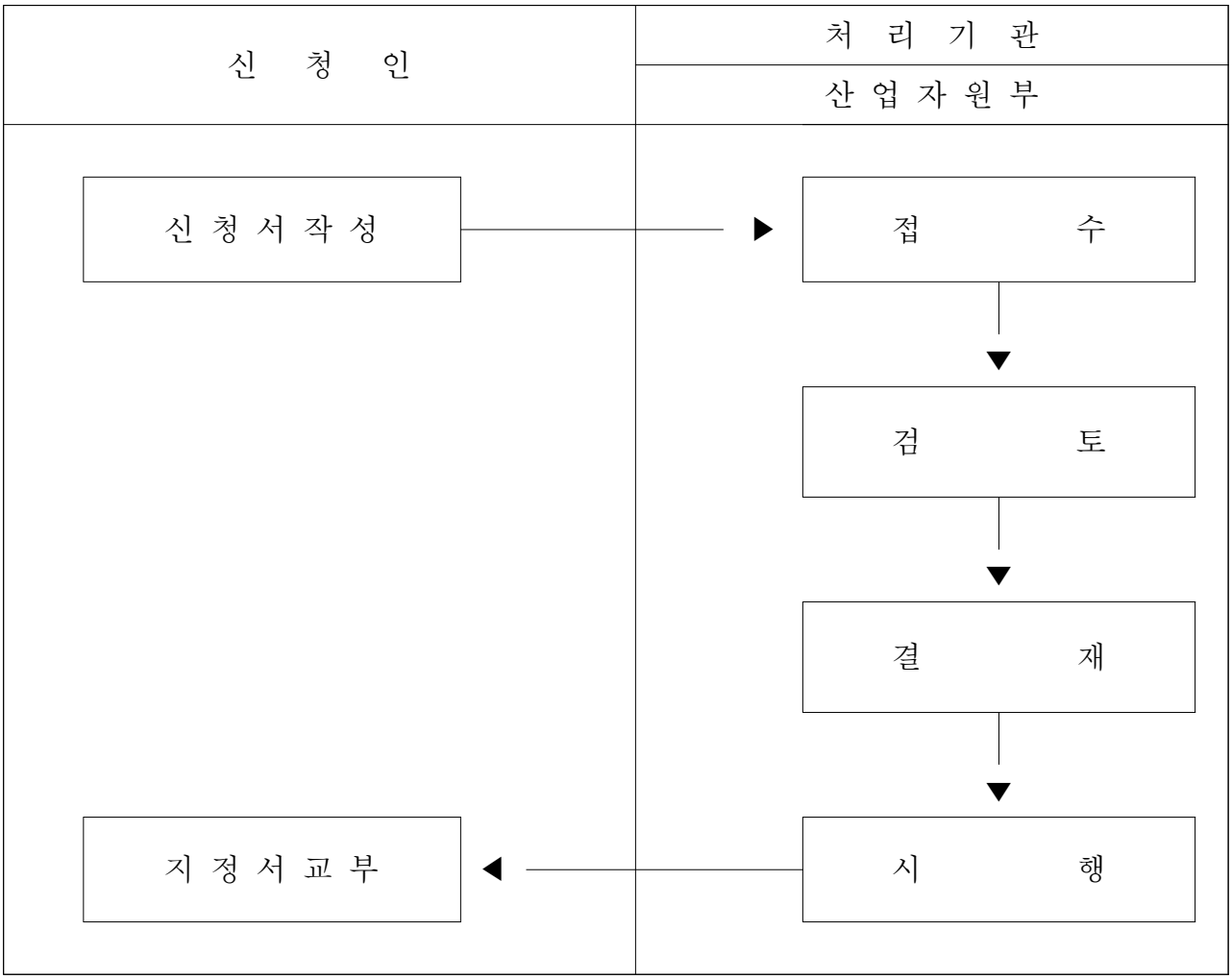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뒷 쪽)